

일반

난민과 이동통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제주에서의 경험 연구*

Refugee and Governmobility:
Experiences of Yemeni Asylum Seekers in Jeju Island

서선영**

본 논문은 Bærenholdt의 '이동통치' 개념과 Sheller와 Urry의 모바일 문화기술지 방법을 기반으로 2018년 제주라는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을 분석한다. 국가와 비국가 기관들이 어떻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성을 제한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통치의 기술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통치의 과정에서 생산된 담론과 규범, '사실'들이 어떻게 예멘 난민 신청자들로 하여금 이동통치를 내면화하게 했는지를 검토한다. 동시에 이들의 주체화(subjectification) 과정이 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동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된 이들의 경험은 국가 및 비국가 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둘러싼 권력의 위계와 다양한 작동방식을 드러낸다. 또한 예멘 난민들이 국가 및 비국가 권력의 이동통치 전략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이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공간과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임에도 솔한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재현함으로써 난민이 겪는 불평등과 배제, 차별과 같은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여 한국사회 난민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지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예멘 난민, 제주, 이동통치, 모빌리티, 모바일 문화기술지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2020)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seonyoungseo@cbnu.ac.kr).

1. 서론

“나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2022년 8월, 예멘 출신 난민 후세인은 제3국에서 이동이 멈춰졌다고 했다. 2018년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한 그는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 지위로 거주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국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멘으로도 한국으로도 또 그가 원하는 다른 국가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4년 전, 2018년 7월에도 후세인은 제주도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치로 인해 제주도 바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제주도 내 공공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숙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었던 상황에 대한 갑갑함의 호소였다. 후세인과 같이 생존이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 국경과 지역을 넘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난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이동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난민이라는 이유로 이동이 허락되지 않아 이들은 국가, 도시, 거리, 신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스케일 속에서 지속적으로 멈춰지는 상황에 놓여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경지역에서(Kallius et al, 2016), 보호시설에서(Diken, 2004), 난민신청 과정에서(Ashutosh and Mountz, 2012) 그리고 공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Mason, 2011) 어떻게 국가 권력이 난민들의 이동성을 통제하려 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Mason(2011)은 권력이 난민을 악마화, 주변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난민의 상태를 통치하는 사고체계(mentalities)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이론적 틀로서 유용함을 주장한다. 그는 난민의 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되는지, 이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담론은 무엇인지, 또 실제 상황에서 난민들이 이동의 권리를 어떻게 빼앗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Shelly 와 Urry(2006)가 주장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 이론과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Bærenholdt(2013)가 제안한 ‘이동통치’(governmobility) 개념을 이용해 2018년 제주도에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경험한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후세인을 포함한 예멘인들은 본국의 심각한 내전을 피해 이동을 모색하던 중 2018년 4월과 5월에 말레이시아를 거쳐 집중적으로 제주에 입국했고,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출도제한조치라는 대응을 통해 이들이 제주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주에서 이동이 ‘멈춰진’ 예멘인들은 국가의 치안적 통치 속에서 제주 안에서의 이동 또한 여러 기관과 그룹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비국가 기관들은 어떻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성을 제한했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어떠한 통치의 기술들이 사용되었나? 셋째, 통치의 과정에서 생산된 담론, 규범, 진실을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어떻게 이동통치를 내면화했으며, 이들의 주체화(subjectification) 과정은 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제주에서의 경험 분석은 앞서 언급한 모빌리티와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교차, 확장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또한 한국사회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마주하게 된 권력의 위계와 그 안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현하고 기록하고자 한다. 난민에 대한 국내 연구의 주제는 난민 정책과 법제도(원종택, 1999; 박병도, 2007; 장복희, 2007; 손주희·정하나, 2018; 오태곤, 2016; 정금심, 2018)에서 미디어(신예원·마동훈, 2019; 강진구·이기성, 2019; 정다솜·권순희, 2019), 난민 이슈의 정치화(이병하 2018), 혐오 담론(송영훈, 2019; 오혜민, 2019; 전의령, 2020; 윤은주, 2022)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난민 당사자들의 경험을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2018년 여름 한국사회 난민 논쟁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과 이들의 이야기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제외하고는 들을 수 없었다. 2018년 이후 난민에 대한 질적 연구(정지원·남기범, 2019; 송효진 외, 2018; 박미숙, 2019; 김희주, 2020)가 다소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 난민 인정자들의 정착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 제언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제주에 체류 중이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연구(정지원·남기범, 2019) 또한 이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본 논문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기술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난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을 이동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하여 권력의 작동 방식을 탐구함과 동시에 난민이 겪는 불평등 및 배제와 차별과 같은 인권의 문제를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기하여 한국사회 난민 정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2018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제주에서 진행한 모바일 문화기술지(Sheller and Urry, 2006)를 통해 얻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Sheller와 Urry에 따르면 모바일 문화기술지는 연구를 하는 동안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이동 패턴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동식 문화기술지(itinerant ethnography)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Buscher와 Urry(2009)는 ‘모바일 연구방법’으로 ‘이동을 추적하기’, ‘사람 따라가기’, ‘사람과 함께 걷기’, ‘이동이 전환되는 장소’에서의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제주도 내 공공장소, 숙소, 일터, 일상생활 공간에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찰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제주도 내에서 도보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어떤 루트로 이동을 하고 멈추며, 제주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바일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함께 이동하면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규율화된 이동성을 관찰하고, 차별적인 이동성의 권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이동 통제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대응 공간에 진입하여 참여 관찰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

이었다. 연구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SNS 그룹 참여관찰, 채팅,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본 논문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 12명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과 현지조사 기간에 작성된 필드노트에서 추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 11명, 여성 1명이며, 인터뷰 당시 20대는 8명, 30대는 3명이었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이다. 연구자는 100여 명 이상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머물렀던 H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호텔 및 그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숙소, 이주민 지원 단체, 공공장소 등을 다니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라포를 형성했으며, 이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장소는 카페, 식당, 편의점 앞 휴게 공간, 한적한 해변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

대다수의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아랍어로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랍어와 영어가 가능한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면담을 했다. 참여관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랍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통역의 도움을 받거나, 모바일 통/번역기를 사용해 연구 참여자와 소통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모국어가 아닌 제 3의 언어인 영어로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료를 취득하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의사소통 이외에도 모바일 문화기술지의 장점을 살린 참여관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연구 참여자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표 1> 참고).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제주에서의 경험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 통치성, 이동통치, 주체화에 대한 이론적 틀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제주 입국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안보 담론의 등장을 기술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국가 기관과 비국가 기관이 안보 담론을 기반으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통치적 주체 형성(governmental self-formation)’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결혼 유무	인터뷰 사용언어
1	압둘라	남성	26	미혼	아랍어/영어 통역
2	말릭	남성	38	기혼	영어
3	오사마	남성	28	미혼	영어
4	카림	남성	28	기혼	아랍어/영어 통역
5	나씨르	남성	23	미혼	영어
6	후세인	남성	22	미혼	영어
7	모하메드	남성	31	기혼	영어
8	살림	남성	22	미혼	영어
9	아난	남성	24	기혼	아랍어/영어 통역
10	칼리드	남성	37	미혼	영어
11	자말라	여성	29	미혼	영어
12	하니	남성	27	미혼	영어

(Dean, 1994)에 대해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러한 통치의 과정 속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 개개인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자신에 의한 자신의 통치, 즉 ‘도덕적 주체 형성(ethical self-formation, Dean, 1994)’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장 결말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 이동통치, 주체화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동과 이주로 인해 복잡해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Sheller and Urry, 2006)은 사회과학 내에서 다양한 연구 영역에 영감을 주며 확장되어왔다. Sheller와 Urry(2006)는 그동안 사회과학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사소하게 취급해왔다고 지적하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과학 연구의 질문, 이론, 방법론 차원에서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모빌리티 연구에서 주목할 질문 중 하나는 “누가 이동의 권리와 머무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혹은 누가 이러한 권리에 제약을 받는가?”와 관련된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이다(셀러, 2019). 이동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며, 동시에 이동성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동성 자체에 이미 권력이 스며들어 있음을 의미한다(Creswell, 2010). 민족, 성별, 계급, 국적, 나이 등에 의한 권력의 위계구조 속에서 이동성의 권한은 차별적으로 생성되며, 이동 주체들 사이에 불평등함을 창출하는데(셀러, 2019), 모빌리티 연구는 이러한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젠더적, 인종적, 식민주의적, 신자유주의적 모빌리티 혹은 부동산성의 담론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유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화되고 불안정해지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이동의 자유가 타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져 타자들의 이동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지(셀러, 2019: 130-134)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은 “난민과 같이 이동의 권리를 제약 받는 이들은 어떻게 이동의 권리를 빼앗기는가?”라는 이동이 차별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이동 주체들의 “이동과 정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권력과 담론의 정치, 그리고 모빌리티의 실행”(Hannam, Sheller and Urry, 2006: 4)을 분석하는 데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난민들의 이동성이 어떻게 제약되는지, 또 이들의 이동성을 효과적으로 제약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 담론이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동성이 강화되고 누군가의 이동성이 약화되는데 있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동의 주체는 어떻게 규율화된 이동성을 받아들이고 행위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와 푸코의 연구가 접목될 필요가 있다(만더사이트 외, 2022).

Urry(2007: 49~50)가 이동성과 통치성의 관계에 대해 짧게 언급은 하였지만,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주장자들은 이동성 안에서 권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정교화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Baerenholdt 2013 재인용). 어떻게 모

빌리티가 이동 주체에게 “체화되고, 실행되고, 인지되고, 상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체화가 작동할 수 있는지, 모빌리티를 만들고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화가 어떻게 권력의 레파토리에 포함될 수 있는지”(Jensen, 2011: 26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코의 담론, 지식, 권력, 통치, 주체성 개념을 포함한 통치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푸코의 통치성은 국가를 포함한 제도와 기관들에 의해, 그리고 담론, 규범, 정체성에 의해, 자신을 훈육하고 돌보기 위한 자기 규제와 기술들에 의해 인구의 행위가 통치되는 과정(Foucault, 1991)을 의미하고, 이는 “통치 테크놀로지와 자기 테크놀로지의 만남”(Foucault 1997: 225; 만더사이트 외 2022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정 인구에 대해 이동성이 차별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권력의 기술’과 ‘주체화’에 대한 푸코의 통찰에 초점을 뒀야 한다.

먼저, 권력의 통치 기술에 대한 논의이다. 지식, 기술의 조합 등과 같은 권력의 다양한 양식은 정상주의적 규범과 정상성을 구성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자유로운 이동과 강제된 이동, 좋은 움직임과 나쁜 움직임 등”을 구분하고 “‘위험한’ 모빌리티를 통치하고 구성하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온다(만더사이트 외, 2022: 22). 예를 들어, 2015년 헝가리에서 서유럽으로 이동을 할 수 없게 된 난민들에 대한 연구(Kallius et al, 2016)는 국가 권력이 난민들을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 ‘병리적인 존재’, ‘범죄자’로 명명하는 담론을 사용하여 이들의 이동성을 제약하였으며, 이렇게 난민들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하여, 국가의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자기 통치를 통한 개인의 실천인 주체화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 주체화란 통치의 작업이 개개인들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는 행동을 받아들일도록 교육하고, 선동하고 필요하다면 강요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 개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통치하게 되며, 적절하고, 규제된 행동과 주체성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Huxley, 2008). 권력은 이러

한 ‘자유로운’ 주체가 통치의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데, 특히 교육과 훈련은 정상성과 진실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통치하게 하는 주요 방법이다.

푸코의 통치성 논의를 발전시켜 모빌리티 연구에 결합한 Bærenholdt (2013)는 이동통치(governmobility)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사람들이 이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이동성의 규칙들이 내면화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동성을 통해 통치되는 사람들의 자기-통치를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빌리티 연구가 ‘이동성에 대한 통치’에 집중하면서 ‘이동성을 통한 통치’를 간과했음을 지적하며, 이동성은 통치 자체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며, 사회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동성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주장한다(Bærenholdt, 2013: 26~27). 즉, 이동통치는 국가 권력의 작동인 동시에, 개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이동통치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신혜란, 2017).

마지막으로 “이동성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통치하려는 권력에 이동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푸코는 “통치에 협조하는 것은 결코 종속이나 전면적 용인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협조하는 동시에 반항할 수 있다. 나는 심지어 두 가지가 나란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Foucault, 1982, 고든 외 2014 재인용)고 이야기했다. 즉, 주체화는 통치에 대처하고, 적응하고, 혹은 저항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Rose, 1996)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불안정성과 이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 전략을 논의한 신혜란(2017: 24)은 초국적 이주자들이 국가 혹은 사회의 이동통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통치 의도대로 실천하기도 하지만, 이동과 공간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저항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복된 이주’와 ‘장소 만들기’의 형태로 공간 전략을 취하며, 이러한 전략과 실천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한다.

3. 예멘 난민의 입국과 안보담론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찬반양론의 논쟁이 활발했던 2018년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슈였다. 난민과 관련된 사안은 마치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로 한국사회는 오래전부터 난민을 수용해 왔고, 국제법과 국내법상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한국에 대거 입국한 난민은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이후의 ‘보트피플’이 있다. 1975년 5월 1,355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1차로 부산항에 도착했고(연합뉴스, 2018),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6년 동안 1,382명의 2차 베트남 난민들이 제 3국의 새로운 정착지로 떠날 때까지 부산 난민보호소에서 생활을 했다(노영순, 2013). 법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정부는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는 난민 수용국이었다.

2001년 에티오피아 출신 반정부 활동가가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래로, 난민 신청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5년 150여 명의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 재정착 난민 가족들이 해마다 입국했다. 그리고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도착했던 2018년도 한 해에 난민 신청자 숫자가 1만 6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이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이러한 난민과 관련한 역사적·법적 배경과 신청자 숫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이슈는 오랫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활동가와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수준이었으나, 2018년 예멘인들의 제주 도착과 함께 처음으로 전국가적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과 격렬한 찬반 논쟁이 촉발되었고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주요 이슈가 되었다(조영희, 박서연, 2018).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병하(2018)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전을 한국사회 난민 이슈의 “비정치화 단계”로 구분하고 그 이후 빠르게 “정치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한다. 2018년 당시 난민반대 단체와 같은 행위자들과 여론

의 동향으로 볼 때,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대안을 수용하는 “안보화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평가되지만(이병하 2018), 2018년 난민 논쟁의 주요 이슈가 무슬림 남성들을 ‘테러리스트’와 ‘성폭력범’으로 낙인찍어 국가와 사회 안보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안보 담론이 급속도로 형성되었음은 명백하다.

김현미는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이 “난민 이슈를 인권 패러다임에서 정치, 안보 패러다임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데(뉴스앤조이 2018),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구성되기 시작한 반다문화 담론(이병하, 2018),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이슬람의 이미지에 근거한 이슬람포비아(구기연, 2018),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으며 ‘내부적 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이(서영표, 2016) 인종주의와 엇물려 난민에 대한 반감과 공포, 더 나아가 적대적 감정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예멘인들의 입국과 함께 급격히 형성된 안보 담론에는 테러 위험 노출, 한국사회 집단 정체성의 위협과 같은 주장들도 포함되었지만, 주요하게는 ‘국민의 안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난민들이 범죄행위 등을 통해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범죄화’ 담론이 국가기관, 시민사회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었다.

국가 기관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안보 담론이 형성되는데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기여를 하였다(박정형, 2018). 국가 기관의 첫 행보는 2018년 4월 30일에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청)에 의해 제주 난민 신청자 출도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2017년 12월 에어아시아의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 노선의 취항이후,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예멘출신의 입국자가 48명이었으나, 4월에 81명으로 급증하자 제주청은 더 많은 인원이 입국할 것을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제주 난민 신청자 출도제한’ 조치를 시행해 예멘인을 포함해서 제주도에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제주 지역으로 제한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이에 대해 당시 제주출입국·외국인 청장은 “무사증 입국자가 출입국관리법

이 아닌 난민법을 이용해 난민신청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제주의 소리, 2018)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무사증제도 악용자”로 낙인찍고,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22조(활동범위의 제한)를 출도제한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헤칠 수 있는 자들로 규정한다. 법무부의 출도제한이 예멘 난민심사업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조영희·박서연, 2018: 7)는 입장도 있으나, 심사관 및 통역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심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제주청의 상황으로 볼 때, 출도제한이 난민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예멘을 제주 무사증입국 국가에서 제외 조치”한 것과 함께 예멘인들에 대한 “출도제한 조치”는 제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불안, 무슬림에 대한 혐오, 인종주의적 발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난민들을 육지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었고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증폭되는 계기”(백가운, 2018: 109)를 가장 선도적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치안의 관점에 의한 난민의 범죄화 논리”(김현미, 2018: 217)는 2018년 제주 예멘난민 백서에 나와 있는 제주청의 즉각적인 지역 내 대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급선무는 도민 안전 대책 수립. 제주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했다.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광복 행보가 시작되었다. 먼저 경찰과 해경을 방문하여 예멘인 숙소와 일터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청과 도의회도 찾았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순찰 강화를 약속하였고, 도의장은 제주청과 소통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72).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예멘을 탈출해 인도주의적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한국의 국가기관은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였다. 2018년 6월 초, 예멘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공원과 해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자, 제주청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예멘인의 범죄환경 노출 차단’과 ‘도민의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숙소 및 일자리 마련 대책을 세웠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79). 국가기관은 이들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명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통치 권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정당성 또한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2018: 219)는 “국가란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치안적 통치는 혈연적·영토적·인종적 배타주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며 국민 되기의 과정을 수행해 왔던 국민들의 편협한 신념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이슈를 국익과 치안의 관점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데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안보담론은 한국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반다문화 담론, 이슬람 포비아와 함께 여성, 청년들과 같이 안전하지 못한 삶에 대한 불안의 증가와 함께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국가기관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일관되게 보여준 난민 범죄화와 치안을 위한 통치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안보 담론을 기반으로 국가는 제주라는 공간에서 난민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치안적 통치를 수행한다.

4.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에 대한 통치

1) 국가 기관의 통치적 주체 형성: 담론과 규범

Skeggs(2004: 49)는 이동성 및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권력을 반영하고 또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동성은 사람들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지적한다. 4월말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 근거하여 시행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출도제한조치가 바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 들어온 비시민들에 대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이동하는 권리”(Pecoud and Guchteneire 2006)를 제한함으로써 시민들과는 차별적인 이동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동 통제를 통해 자신의 통치 권력을 보여준 사례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초반부터 제주도에 난민심사 인력 및 수용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도제한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으며(경향신문 2018), 국가인권위(2018 6월 28일 보도자료)는 “부족한 심사인력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 진행이 어려우며, 생계 및 주거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 출도가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나씨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 바깥으로 나간다, 예멘 사람들만 빼고”라며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 시행이 불평등함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출도제한조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6조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홍정화, 김은혜 2019), 국가가 집단적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성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보여 주고 또 강화한 첫 번째 조치였다.

이렇게 제주에서 육지로 갈 수 없게 된 예멘인들은 6월부터 언론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반 난민, 반 이슬람 정서, 난민들에 대한 불안, 공포, 혐오 담론의 영향으로 제주도 내 공공장소에서도 이동이 제한되었다. 예멘인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6월 중순부터 법무부는 주요 쟁

점 사항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난민 반대 진영에서 형성한 난민 범죄화 및 국민안전담론을 채택하여, 난민들을 치안을 위협하고, 일자리 잠식을 우려케 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으로써 국가 기구가 이들에 대한 통치 역할과 책임감이 있음을 강조한다. 2018년 6월 20일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설명회 등 계기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이라고 대책을 제시한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그림 1> 예멘 난민 신청자의 여권



출처: 저자 촬영(2018.8.5).

<그림 2> 예멘 난민 신청자의 그림

“나는 새장 속에 갇혀있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



출처: 저자 촬영(2018.8.6), 제주 컬러북 워크숍: 예멘과 한국의 공동 작업장 행사.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치의 대상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통치적 주체형성의 방식 중 하나가 교육을 통해 특정 담론에 기반을 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규범, 행동양식 등을 형성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8년 7월 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법질서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

로” 했다는 발표를 했고, 7월에 228명, 8월 237명의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제주청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한국사회 문화 및 이해」, 「기초법질서」, 「출입국관리법 등 안내」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했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이용, 집구하는 방법, 가스 사용, 긴급 상황 대처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과 법을 배웠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인 오사마는 교육이 어땠냐는 질문을 듣자마자 본 연구자를 향해 구십도로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예절 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육 내용을 전달했다.

우리는 한국에 왔으니까 **여기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한국 여자를 쳐다보거나, 한국 여자한테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또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떠들지 말고, 싸우지 마라, 아이들 보고 웃으면 안 된다, 그룹으로 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_ 오사마

오사마가 교육 내용 중 인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여성 및 아이들과 접촉할 때 필요한 한국에서의 예의와 문화가 강조 됐음을 진술했다. 종교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 그리고 이슬람포비아를 바탕으로 형성된 안보 담론은 난민들에 의한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담론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라는 ‘사실’로 전달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을 만나는 걸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어떤 여성도 건드리면 안 되고, 같이 어디를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그리고 **한국의 법에 따르면** 아이들을 만지거나 같이 놀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_ 하니

예멘과 한국의 문화, 규범, 예절이 다름을 강조하며, 한국의 문화와 규범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거리를 두고,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연구 참여자인 후세인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다소의 의아함을 보이며 “우리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아이들을 숭배하죠. 아이들을 보면 안녕이라고 말하고, 그건 매우 일반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요”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문화이고 규칙이라는 ‘사실’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관의 교육은 무슬림 난민 신청자들이 여성과 아동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담론을 기반으로, 한국의 법, 규범, 문화는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의 리스트를 정보로 제공하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스스로 행동 양식을 형성, 규제하도록 한다. 특히 보편적인 한국문화와 기초 법 질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여성 쳐다보지 않기, 여성과 같이 다니지 않기, 아이에게 관심 보이지 않기, 그룹으로 다니지 않기와 같은 행동양식들을 예멘 난민 신청자들 스스로 받아들여 함으로써, 이들의 물리적 이동과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 비국가 기관의 통치적 주체형성: 사고방식, 태도, 행동양식

국가기관이 공식적인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에 대한 통치를 실행하려 했다면, 국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비국가 기관들은 이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담론을 재생산하고, 규범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일상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직업소개 및 한국어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부 난민 지원 단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일상적으로 특정 사고방식(mentalities)과 태도,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도적일 수 있었다. 이들 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에게 비국가 기관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이동에 대한 통치가 실행될 수 있었다. 특히 비

국가기관이 이렇게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이동 통치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요인은 제주에서 난민 이슈가 부상하자마자 민관 협력 체계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2018년 6월 22일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포함한 민관 6개 기관을 주축으로 난민대책을 논의하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였고(조영희, 박서연 2018),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특별전담반 이외에도 “자원봉사와 의료봉사 단체, 종교계, 개인 독지가들과 연계하고 또 상호 연계를 주선하면서 그물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135). 이러한 민관 협업에 대해 제주청은 인권단체와 역할분담을 한 것이며 “같은 방향을 향해 뜻을 모았다…제주청 아니 출입국 역사를 통틀어 이번처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135)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출도제한으로 인해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수많은 개인, 종교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고, 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인 제주청은 전례 없던 성공적인 민관 협업이라 평가하지만, 이러한 협업은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치안적 통치”(김현미 2018:219)를 맡아 온 국가기관인 제주청과 비국가기관인 일부 난민 지원 단체들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이동통치를 함께 수행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여러 난민 지원 단체들 중에서도 제주청과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가기관이 채택한 국민 안전담론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갖고 있는 몇몇 단체들은 국가기관이 법질서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이라며 제시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지키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비국가 기관의 이동에 대한 통치 방식은 7월초부터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기에 상당수의 예멘인들은 입국 전 마련한 경비가 바닥이 나고, 제주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경제난에 시달렸고, 일부는 심지어 바닷가 인근에서 노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난

민 지원 단체, 종교 단체, 지역 공동체 및 개인들이 긴급하게 마련한 숙소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일부 공동 숙소는 “통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공간”(Huxley, 2008)이 되었다. 특히 집단적으로 많은 예멘인들이 거주하게 된 쉼터의 경우 이동에 대한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8년 7월 20일, 본 연구자는 60여 명 이상의 젊은 남성들이 5개의 크고 작은 방에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E 난민 쉼터에 연구 참여자 하나의 안내로 들어갔다. 방마다 2층 침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숙식을 해결하기에는 좁은 공간과 불쾌지수를 높이는 더운 날씨가 맞물려 쉼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인 후세인이 방에 들어와 연구자에게 며칠 동안 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어제 저녁 10시 넘어서 쉼터에 들어오니, 쉼터 관리자가 오늘부터는 9시까지 쉼터에 들어와야 하고, 술을 바깥에서도 안에서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9시에 점호를 한다고 해요. 아니, 낮에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서 우리는 나가지 않고, 주로 밤에 나갔어요. 그런데 밤에 나가면 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밤에도 다니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_ 후세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어깨를 으쓱하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같은 시기에 E 쉼터에서 머물다가 종교 단체의 숙소로 이동을 한 연구 참여자 살림도 난민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쉼터가 예멘인들에게 제시한 규정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정부가 쉼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쉼터 방에 거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있고, 일부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고 사는 것, 어렵다고 봐요. ……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바는,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잇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우리

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뭘가 바깥 냄새를 맡고 싶죠. 우리는 나가고 싶어요. 바깥에 나가야 생각도 수 있고, 기분도 나아지는데, 쉼터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_ 살림

살림은 6월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난민 혐오 정서를 의식해 예멘인들에게 “바깥출입을 삼가하고, 음주를 금지”한 쉼터 관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라”, “기다려라”라며 자신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좁은 숙소에 가둬놓는 비인간적인 방식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게 된 근원에는 제주청과 같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비국가 기관인 E단체 또한 난민 신청자들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 실제로 예멘인들의 야간 이동을 금지하는 생활규칙을 만들고 강제하는 과정은 제주청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제주청은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활 계도 활동을 해왔는데, 이는 국가 기관과 비국가 기관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협력적 이동통치가 원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쉼터라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관리를 담당해온 E 단체는 이들에게 ‘문제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생활규칙을 받아들여야 함을 직접적으로 강제한다. 살림은 쉼터 관리자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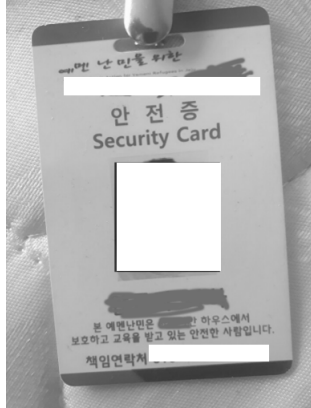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밖에 나오는지, 또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어요. 몇몇 예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예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쉼터 관리자는 예멘 사람들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였지요. _ 살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E지원 단체의 쉼터에 비해, 도시 외곽의 주거 단지에 난민 신청자들의 숙소가 만들어졌을 경우 지역 사람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항의에 국가 기관인 제주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숙소 일대 순찰,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으로 응답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9: 88). S지원 단체는 예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며, 더욱 강력한 기구로서 치안활동을 강화한 제주청의 활동에 보조를 맞추었다. 이 단체는 쉼터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행동을 조심시키며 이동을 통제했는데, 쉼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저희들도 예멘 애들의 바깥출입을 자제 시키고, 나갈 때는 한국인이랑 동행을 시켰어요. 저희 애들은 모두 이름표를 부착하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저희가 온 다음부터 경찰 순찰도 강화되었죠. _ 쉼터 관리자

실제로 2018년 10월 20일, 본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 살펴본 쉼터의 생활 수칙에는 “외출하거나 이동이 필요할 시는 가급적 함께 차로 이동하기로 한다. 한국인 없이 그룹으로 동네를 배회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 가게를 가는 것도 한국 스텝과 함께 이동하여 구입하고 돌아오자”라는 조항이 있었다. 쉼터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바깥에 나갈 때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본 예멘 난민은 S 쉼터에서 보호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가 인쇄된 “안전증”을 목에 걸어야 했다(<그림 3> 참조).

S단체는 안전증을 통해 이들은 ‘교육 받고 있는’ 대상,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은 ‘안전한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협적인 존재,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난민의 범죄화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에 기반해 이들의 사고, 태도, 행동 등을 형성하는 통치를 수행한다.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가 노골적인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낯선 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잠잘 곳이 없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숙소와 음식, 그리고 공동체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림 3> S 단체 난민 쉼터의 안전증

출처: 저자 촬영(2018.11.2).

기관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동등할 수가 없다. 쉼터 관리자가 성인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애네들”이라고 호명하는 상황은 단체와 난민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위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 비국가 기관인 S 단체는 쉼터에 입소한 예멘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쉼터 관리는 이 단체가 받아들인 안전 담론에 기반하여 주체들에게 순응적이고 규제된 행동을 요구하는 통치를 포함한다. 공간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통치 프로젝트는 공간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만들어내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Huxley, 2008). S단체의 쉼터는 바로 이러한 통치성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생활 수칙에 따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목에 ‘안전증’을 걸어야만 이동 할 수 있는, 원래는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 다시 규정된다.

5.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에 대한 자기-통치

국가 기관과 비국가 기관의 이동 통치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고, 관독하고, 행위 하는 ‘자신에 의한 자신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Dean(1994)은 이를 “도덕적 주체 형성(ethical self-formation)”으로 명명한다. 이러한 도덕적 주체 형성의 과정에서 주체는 단일한 형태로 생산,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양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듯이, 스스로를 주체화 하는 데에도 여러 방식들이 존재한다(Rose 1996). 즉, 주체는 통치 프로젝트에 순응하는 자기-통치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항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통치에 대처하고, 적응하고, 혹은 저항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Rose, 1996: 35).

1) 권력의 통치를 내면화하는 주체: 보이지 않는 존재되기

많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자신들의 이동성을 제한하여 공공의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는 기관들의 통치를 위한 합리성, 담론, 진실을 내면화하여 이를 자신들의 행위의 규범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살림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존재”, “한국의 시스템을 잘 따르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우리 친구들 그룹은 2명, 2명씩 이렇게 다녀요.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니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시스템을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담배꽂초를 길거리에서 버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꽂초를 주웠어요. 나는 꽂초 하나를 줬지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에 있는 걸 다 주워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_ 살림**

살림은 자신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구성하는 난민에 대한 외부인 혐오증 및 범죄화 담론을 인지하고, 이러한 담론의 영향으로 예멘인들을 두려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여러 명이 다니지 않고, 2인 1조 형태로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국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낮 보다는 밤에 바깥에 나갔으며, 한국사회가 원하는 ‘적절한 행위’를 하는 ‘착한 난민’이 되기 위해 거리의 쭈뼛춤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는 한국의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가기관 및 비국가기관이 통치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게 촉진시킨 ‘사고방식(mentalities)’과 ‘개인 내면의 상태(inner-states of individuals)’를 보여준다(Huxley, 2008).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켜야 한다고 교육 받은 법과 규범의 내용은 ‘보편적 진실 혹은 사실’로 전달이 되었고, 사실에 대한 믿음은 이들이 스스로의 이동성을 규제하는 자기-통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단지 예멘 사람들만을 위한 규칙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규칙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통역자가 말하기를 그 자신도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만질 수 없고, 심지어 여성들을 쳐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다른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와 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서 왔으니까요.** _ 후세인

후세인은 한국의 법과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과의 만남, 접촉, 심지어 시선에 이르는 신체적 스케일에서 규제된 이동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이동에 대한 자기-통치가 합리성을 갖는 이유는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에 대한 절대적 의존 상태가 권력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어디 있던지 간에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도망가거나 무언가 일을 저지른다면, 정부에서 나를 잡아서 추방시키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에요” 라며 강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쉽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줬어요. 일,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쉼터 운영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바깥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한거죠”라며 비국가 기관인 난민지원센터의 이동 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 공공장소에서의 이동 및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에 스스로 규율을 부여하고 규제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가 기관의 강압과 비국가 기관의 위계적 권력관계 속에서 이동 통제의 통치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것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된 일터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자기-통치 방식은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은 하되 지역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의해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하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어느 날, “하니, 너는 주방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고 사장이 그랬어”라고 하면서, “사장은 손님들이 널 안보기를 바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바깥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식당)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한 후에 화장실에 먼저 갔어요. 식당에 가서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쉬는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없을 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니까요. _ 하니

하니는 친구 모하메드가 일터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 해고된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스스로 주방에 감금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영업 중에는 주방에서 화장실까지 나가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신체의 순환을 조절하여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하니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고립된 곳에서 노동을 했던 카림의 경우, 제주에서 처음 31일간 일을

한 곳에서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한국 사장이 (나를) 때렸어요. 전쟁으로 예멘은 전기, 수도도 없이 생활하고 너무 힘들지만 한국에서도 힘들어요.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장이 때릴 때 그만하라고 말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사장을 향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 누구 한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이곳에 있는 466명 예멘 사람들이 문제라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참았어요. _ 카림

카림이 물리적인 폭력에도 대응하지 않은 채 ‘멈춰’ 있어야 했던 이유는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자기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 이는 이미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이 종교적 본질주의에 기반하여 무슬림인 예멘인들에 대해 ‘문제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자신은 어떤 문제도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해야 된다는 통치의 사고방식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내면화는 폭행의 현장에서도 카림을 움직이지 않게 했고, 폭행에 대응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했다.

2) 권력의 통치에 대항하는 주체: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국가 기구와 비국가 기구의 목적대로 이동을 제한하는 통치를 수용하여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한 저항이자, 자신들의 이동성을 제한하여 ‘정지’하게 만든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갇힌 공간을 나와 이동을 한다. 이러한 이동성은 새로운 공간을 열고, 그 공간 속에서 접촉과 만남을 통해 연결성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다.

즉, 구조와 행위자에 대한 고전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동을 통해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주체성(subjectivities)를 형성해 가는지에 대해 ‘이동’을 전면에 내세워 설명하고자 하는데(Sheller and Urry, 2006: 216),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성의 정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동성이 만들어지는 방식”(Cresswell 2010: 21)으로 나타난다. 즉, 지배적인 모빌리티 체제에 도전하는 “전복적인 모빌리티”(셀러 2018)의 형태로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의 공간적 전략”(신혜란 2017)이 사용된다.

2018년 제주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일시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형성되었던 장소 중 한 곳은 편의점 앞이었다. CU라는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영어 명칭, 제주시내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실외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주로 저녁 시간에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버스터미널 앞 CU, 시청 앞 CU 등 장소는 바뀌어도 CU 앞에서 만남을 종종 가졌고, 이들이 모이는 특정 시간에 CU 앞은 일시적인 대응 공간(counterspace)으로 형성되었다.

<그림 4> 제주시 내 편의점 앞



출처: 저자 촬영(2018.9.23).

나씨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투숙했던 호텔 주변의 CU에서 밤마다 자주 마주쳤던 연구 참여자이다. 그는 CU 앞 공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이곳을 정말 좋아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여기 오면 아주 편안해요.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함께 즐기고, 음식도 나누고, 같이 웃고, 농담도 하고. 마치 하나의 팀처럼 말이에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는 여기 머물러서 그것에 대해 왜 그들은 이렇게 쳐다볼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에게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거야 라고 얘기하곤 해요. _ 나씨르

나씨르는 국가 및 비국가 기관의 이동통치 방식에 대해 “매일 매일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가르치며, 그것이 한국의 규칙이라고 한다”면서 예멘인들에 대한 통제에 비판적이었고, 난민지원단체의 쉼터가 아닌 가장 저렴한 호텔 방에서 지내며 지속적으로 거리로 나왔다. 나씨르에게 공공장소인 편의점 앞은 자신의 동료들과 임시적 공간을 만들어 권력의 통치에 맞서 대응행동을 가능케 하는 장소가 된다. 지역 사람들의 차별과 통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진입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편의점 앞은 열려 있는 공간이고,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일시적인 장소 점유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지역 주민들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응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반복된 이동을 통해 공공장소에 출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권력의 지배적 모빌리티에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응시하는 한국인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응시에 대해 논평하고 이를 동료 집단과 함께 농담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록 잠깐이지만 권력의 위계를 뒤집는 전복적 순간의 경험이 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장소 만들기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씨르는 “편의점 앞에 있는

데, 한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일은 있냐?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일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친구를 통해 일을 소개해줬어요”라며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국가와 비국가 기관의 이동통치 논리가 예멘인들을 고립시키고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 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수행되는 ‘끊임없이 이동하기’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연구 참여자 아난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관찰한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는 이러한 관계의 확장을 보여준다. 다음은 2018년 8월 1일에 작성된 현장노트이다.

오사마는 아난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바다에 간다고 했다. 두 친구는 매일 저녁 탐동에 간다. 거기를 ‘바다’라고 이야기한다. 탐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도 많이 가보고, 지금은 S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그 친구들을 3일 전에 처음 탐동에서 봤는데, 매일 밤 만났고 오늘밤에도 만날 것이라고. 탐동 방파제에서 만난 세 명의 한국 친구는 광주에서 왔다고 했다. “내 이름은 민주화야. 애는 노조 위원장이고, 재는 S 회사에 다녀. [예멘 친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방송에서 이상하게 나오고”라고 한다. 자신을 민주화, 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성은 전쟁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나는 3번 죽을 뻔했어.” 예멘의 내전 경험과 교차되는 민주화의 광주에서의 경험이 아난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_ 2018년 8월 1일 현장노트

현장노트를 작성했던 8월 1일 다음 날, 아난의 친구 하템은 “우리는 계속 혼자 있었고, 혼자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머리도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깐 좋다”라며 광주에서 온 한국인 친구들을 위해 집에서 요리한 예멘 전통 음식을 큰 솥에 담아 탐동으로 향했다. 다음날이면 광주로 돌아갈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예멘에서 갖고 온 반지를 선물하자, 한국인 친구들은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라고 감동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그리고 제주에 여행 온 세 명의 한국 친구와 예멘 친구들은 모두 모여 사진을 찍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 아난과 그의 친구들은 매일 밤 공공장소인 탑동으로 이동함으로써 국가와 비국가 기관의 이동통치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장소에서 관계의 확장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여행객이었던 한국인과 난민 신청자인 예멘인들의 조우와 공감 그리고 친교는 4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성 속에서 임시적 공간을 만들며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광주와 예멘의 경험을 통해 내전의 아픔을 나누고, 한국과 예멘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열고,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던 난민에 대한 범죄화 및 혐오 담론의 허구성을 함께 비판하며,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권력의 이동에 대한 통치에 저항하는 대항 공간을 마련했다.

6. 결론

본 논문은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로 입국했으나, 제주에 갇혀 이동의 통제를 경험했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후세인이 4년이 지난 2022년 제3국에서 또 다시 아무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멈춰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했다. 영상통화 스크린을 통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후세인은 생존과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찾아 계속해서 이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후세인과 같은 난민에게 이동의 제약은 종종 삶과 죽음의 문제이자, 보편적 권리의 침해라는 인권 의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지역, 도시, 신체의 다양한 스케일에서 난민의 이동에 대한 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또 이동 주체인 난민들은 이동의 통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기존의 연구들은 난민들이 국적, 민족, 계급, 성별 등에 의한 권력의 위계 속에서 차별적인 이동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동성의 실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이론에 푸코의 통치성 논의를

결합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대다수의 난민들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이동의 권리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이동성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 속에서 2018년 제주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이동통치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동성을 통치성 개념의 초점으로 삼은 ‘이동통치’라는 분석틀과 모바일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와 비국가 기관들이 사용한 통치의 기술들, 통치의 과정에서 생산된 담론, 규범, ‘사실’을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이동통치를 내면화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들의 주체화 과정이 이동성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국가 기관은 난민 범죄화 및 국민안전담론을 채택하여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시민들과는 차별적인 이동의 권한을 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권력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법무부와 산하 기관들로 대표되는 국가 기관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한국의 법, 규범, 문화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실’로 믿게 함으로써 행동양식을 규제하는 통치의 기술을 사용한다. 보편적인 한국 문화와 기초 법 질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여성 처다보지 않기, 여성과 같이 다니지 않기, 아이에게 관심 보이지 않기, 그룹으로 다니지 않기 등의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제주도 내에서 물리적 이동과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동양식을 스스로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비국가 기관들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담론을 재생산하고, 규범을 만들고, 일상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비국가 기관의 이동에 대한 통치는 난민지원단체와 이들 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난민 신청자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실행될 수 있었다. 일부 난민 지원단체들인 이들 비국가 기관은 난민 신청자들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라는 범죄화 담론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문제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생활규칙을 받아들여야 함을 직접적으로 강제했다.

이러한 국가 및 비국가 기관의 이동 통치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고, 판독하고, 행위하는 ‘자신에 의한 자신의 통치’를 하게 된다. 많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자신들의 이동성을 제한하여 공공의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는 기관들의 통치를 위한 합리성, 담론, 진실을 내면화하여 이를 자신들의 행위의 규범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켜야 한다고 교육 받은 법과 규범의 내용은 ‘보편적 진실 혹은 사실’로 전달이 되었고, ‘사실’에 대한 믿음은 이들이 스스로의 이동성을 규제하는 자기-통치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과의 만남, 접촉, 심지어 시선에 이르는 신체적 스케일에서 규제된 이동성을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이동에 대한 자기-통치가 합리성을 갖는 이유는 국가 기관과 비국가 기관에 대한 절대적 의존 상태가 권력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자기-통치과정은 국가기구와 비국가 기구의 통치방식을 수용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이들은 도시 공간에서 일시적인 교류의 장소를 만들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되기를 원하는 지배적 모빌리티에 맞서기도 한다. 또한 비록 잠깐일지라도 차별적 시선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권력의 위계를 뒤집는 전복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인 이동을 통해 국가와 비국가 기관의 이동 통치에 대응하는 장소 만들기를 수행하고, 그 안에서 관계의 확장을 모색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2018년 여름 한국사회 난민 논쟁을 촉발한 당사자들었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제외하고는 들을 수 없었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기술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실천적 영역에서 기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차용한 이동통치 개념과 모바일 문화기술지 방법은 이동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2018년 제주에 도착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들

러싼 권력관계와 그 작동방식,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땅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을 드러내주었다. 특히 제주도에 고립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겪었던 불평등 및 배제와 차별을 난민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한국사회 난민 정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난민을 경험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권력과 공간, 이동성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통치’를 논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난민을 넘어 다양한 연구 영역에 적용되어 우리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2022.12.08.

심사완료일: 2022.12.17.

게재확정일: 2022.12.28.

최종원고접수일: 2022.12.31.

Abstract**Refugee and Governmobility:
Experiences of Yemeni Asylum Seekers in Jeju Island**

Seonyoung Seo

This article analyzes the experiences of asylum seekers from Yemen who entered Jeju Island in 2018, based on Jørgen Bærenholdt's concept of governmobility and mobile ethnography proposed by Mimi Sheller and John Urry. How state and non-state agents regulated the mobility of Yemeni asylum seekers, how techniques of governmentality were used, and how they internalized the discourse, norms, and 'truths' generated during this process are examined. The article also draws attention to how the asylum seekers' subjectification affected their own mobilities. The experiences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mobilities reveal the power dynamics that reflect the hierarchical relations caused by their dependence on state and non-state agents.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illustrates how Yemeni asylum seekers are by no means simple receivers of the state and non-state agents' governmobility strategies, but are agents themselves that can challenge top-down control and create their own spaces and social relations. Despite heated debate sparked by the presence of Yemeni asylum seekers in Jeju Island in the summer of 2018, their voices have been absent in public discussions. By shedding light on human rights issues such as injustic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e mobile ethnography of Yemeni asylum seekers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South Korea's refugee policies from a critical viewpoint.

Keywords: Yemeni refugee, Jeju, governmobility, mobilities, mobile ethnography

참고문헌

- 강진구.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0권, 103~113쪽.
- 고든 콜린(Gordon Colin) 외. 2014. 『푸코 효과』. 심성보 외 옮김. 난장.
- 구기연. 2018.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한국의 이슬람 혐오와 난민 문제」. 《창작과 비평》, 46권 3호, 401~412쪽.
- 김현미. 2018.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가을 호, 210-228쪽.
- 김희주. 2020. 「국내난민인정자의 사회적 배제경험」.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342-372쪽.
- 노영순. 2013.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한국에 들어온 2차 베트남 난민(197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권 2호, 75-108쪽.
- 만더샤이트 카타리나(Manderscheid Katharina) 외. 2022. 『모빌리티와 푸코』. 김나현 옮김. 앨피.
- 박미숙. 2019.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권 2호, 217~251쪽.
- 박병도. 2007. 「우리나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9권 2호, 169-194쪽.
- 박순용·서정기. 2014. 「이주난민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경험의 탐색: 콜라지의 분석방법에 기초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권 3호, 103-132쪽.
- 박정형. 2018. 「예멘 난민신청자 이슈의 등장과 확산」.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난민기구 주최 “난민 이슈로 본 이방인과의 만남과 환대 좌담회” 발표문, 2018년 7월 26일.
- 백가운. 2018. 「제주예멘난민」. 인종차별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자료집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셀러, 미미(Mimi Sjeller) 2019. 『모빌리티 정의』. 최영석 옮김. 앨피.
- 손주희·정하나. 2018.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탐색: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2권 2호, 1-22쪽.
-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 2018.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이화젠더법학》, 10권 3호, 149-189쪽.
- 신예원·마동훈. 201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권 2호, 31-80쪽.
- 신혜란. 2017.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27권 4호, 9-35쪽.
- 오태곤. 2016.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인문사회21》, 7권 1호, 431-449쪽.
- 오혜민. 2019. 「혐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권 2호, 157-191쪽.
- 원종택. 1999.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고찰(하)」. 《법조》, 48권 9호, 245-282쪽.
- 윤은주. 2022. 「정치화된 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37권, 1-25쪽.
- 이병하. 2018.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5권 4호, 33-68쪽.

- 장복희. 200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출입국관리 법안을 중심으로」. 《법조》, 56권 2호, 145-168쪽.
- 전의령. 2020. 「타자의 본질화 안에서의 우연한 연대: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 반대의 젠더정치」. 《경제와 사회》, 125권, 360-401쪽.
- 정금심. 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법조》, 67권 3호, 645-698쪽.
- 정다솜·권순희. 2019. 「신문기사에 나타난 ‘난민’ 관련 은유 표현 연구: 제주도 이주 예멘 난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63권, 1-34쪽.
- 정지원·남기범. 2019. 「제주 지역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9권 8호, 715-724쪽.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2019.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조영희·박서연. 2018. 「제주 예멘 난민 논쟁을 통해 본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쟁점」.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No.2018-04.
- 홍정화·김은혜. 2019.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 관리 이론과 실천》, 15권 4호, 47-62쪽.
- Ashtyish, I. and Mountz, A. 2011. “The Geopolitics of Migrant Mobility: Tracing State Relations through Refugee Claims, Boats and Discourses.” *Geopolitics*, Vol.17, pp.335-354.
- Bærenholdt J. O. 2013. “Governmentality: The Powers of Mobility.” *Mobilities*, Vol.8, No.1, pp20-34.
- Cresswell, T. 2010. “Towards a Politics of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28, pp.17-31.
- Dean, M. 1994. “A Social Structure of Many Souls: Moral Regulation Government and Self-formation.”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19, No.2, pp.145~168.
- Diken, B. 2004. “From Refugee Camps to Gated Communities: Biopolitics and the End of the City.” *Citizenship Studies*, Vol.8, No.1, pp.83-106.
- Foucault M. 1991. “Governmentality.” in Burchell, G., C. Gordon, P.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London: Harvester-Wheatsheaf pp.87~104.
- Hannam, K., Sheller, M, and Urry, J. 2006. “Editorial: Mobilities, Immobilities and Moorings.” *Mobilities* Vol.1, pp.1~22.
- Huxley, M. 2008. “Space and Government: Governmentality and Geography.” *Geography Compass*, Vol.2, No.5, pp.1635-1658.
- Jensen, A. 2011. “Mobility, Space and Power: On the Multiplicities of Seeing Mobility.”

Mobilities, Vol.6, pp.255~271.

- Kallius, A., Monterescu, D., Rajaram, P. K. 2016. "Immobilizing Mobility: Border Ethnography, Illiberal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the "Refugee Crisis" in Hungary." *American ethnologist*, Vol.43, No.1, pp.25-37.
- Kaufmann, V., Bergman, M. M., Joye, D. 2004. "Mobility: Mobility as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8, No.4, pp.745-756.
- Mason, V. 2011. "The Im/Mobilities of Iraqi Refugees in Jordan: Pan-Arabism, 'Hospitality' and the Figure of the 'Refugee'." *Mobilities*, Vol.6, No.3, pp.353-373.
- Pecode, A. and Guchteneire, P.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Border Controls and Human Rights: Assessing the Relevance of a Right to Mobility."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Vol.21, No.1, pp.69-86.
- Rose, N. 1996. "Identity, Genealogy, history." in Hall, S. and du Gay, P.(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p.128~150.
- Sheller, M. and Urry, J.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8, pp.207-226.
- Skeggs B. 2004. *Class, Self, Culture*. London: Routledge.
- 경향신문. 2018.6.30. "유엔난민협약 가입한 한국 '책임분담률 0%' 손 놓고 있지만 혐오 정서는 더욱 커져".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806300600015
- 뉴스앤조이. 2018.6.29. "예멘인 추방하자는 사람들, 21세기 '인종주의자'". <http://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85>
- 연합뉴스. 2018.7.8. "부산 난민보호소 아시나요...베트남 보트피플 임시 체류".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6145600051>
- 제주의소리. 2018.6.25. "제주 첫 예멘 난민 나오나? 심사 시작 출도 제한은 불가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019>